

장학금 지급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장학금의 종류) 본 대학교 장학금은 학교장학금과 교수회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으로 한다.

제 3 조(장학금의 지급 대상자 및 기준)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본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학생 중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.

1. 수석입학장학금 : 입학전형에서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자
2. 성적우수장학금 :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 순위로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 학업 성적 순위로 선발된 자(단, 대학발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학위를 이수하는 학과의 성적장학금은 총장의 재가를 득한 후 그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장학생 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.) (2010.10.26 개정)
3. 재입학장학금 : 본 대학교를 졸업 또는 제적하고 재입학한 자로서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
4. 연계교육장학금 : 고등학교에서 우리대학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
(개정 2012.2.13.)
5. 경제사정곤란자장학금 : 경제사정곤란자 장학생 선발기준에 준하여 선발된 자
6. 가족장학금 : 부모·부부·형제·자매 2인 이상이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 (개정 2016.2.15. 장학금 명칭 개정)
7. 유학장학금 : 자매결연대학에서 수학하고자 소정의 심사를 거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자 중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
8. 특기장학금 :
 - 일반 :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, 주관하는 각종 전국규모경진대회 입상자(1위, 2위, 3위)로서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 (개정 2012.8.21.)
 - 특기자 :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상위 입상자 또는 도내 1위 입상자로서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
9. 공로장학금 : 품행이方正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며,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. 다만, 총장이 가정형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.
10. 교직원 복지 장학금 :
 - 본인 및 배우자, 부모 :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로 본 대학교에 입학(전공심화과정 포함) 또는 재학하는 자
(개정 2009.4.24, 2010.10.26., 2012.4.23)

- 자녀 : 본 대학교 및 부설유치원에 재직하는 정직 교직원 자녀로서 본 대학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 (개정 2009.4.24., 2012.2.13., 2012.8.21)
- 11. 근로장학금 : 가정환경이 곤란하고 성실한 자 또는 학과장이 추천한자로 근로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 (개정 2013.2.8.)
- 12. 교수회장학금 :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
- 13. 교외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(개정 2012.8.21.)
- 14.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: 국내 거주 5년 이상 경과 된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중 정원으로 입학하여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(2010.10.26 신설)
- 15. 다문화장학금 :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양한 문화의 가족으로 구성된 자 (2011.04.04. 신설)
- 16. 장애인장학금 :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본인이 장애1~3 등급에 해당되는 자 (2011.04.04. 신설, 개정 2012.8.21)
- 17. 동아리장학금: 당해연도 등록동아리중 동아리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 (2011.04.04. 신설)
- 18. 인증장학금 : 대학교 및 학과 인증관련 학과장의 추천으로 선발된 자 (2011.08.29. 신설)
- 19. 전공심화장학금 : 전공심화과정 입학학생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통과자 (신설 2012.2.13.)
- 20. 협약장학금 : 본 대학교와 타 대학 및 업체 등 협약에 의하여 선발된 자 (신설 2012.2.13.)
- 21. 산업체장학금 : 산업체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(신설 2012.2.13.)
- 22. 사생장학금 : 한라학사사생으로 직전학기 성적보다 성적향상이 탁월한 자 및 외국어 교육 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(신설 2012.2.13.)
- 23. 한라장학금 : 대학 발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학생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 (신설 2012.9.20, 개정 2013.12.03.)
- 24.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: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학생으로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.(신설 2014.4.17.)
 - 가. 국제교류원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
 - 나. 한국어능력시험(TOPLK) 3습 이상 소지자

제 4 조(장학위원회)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‘장학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제 5 조(구성)

1. 장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2.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.
3. 위원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 6 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
제 7 조(위원회의 기능) 장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.

1. 장학금에 관한 기본방침
2.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
3. 지급할 장학금 등급과 금액의 결정
4.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

제 8 조(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)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별로 선발한다. (개정 2012.8.21.)

제 9 조(장학금의 지급범위) 장학금의 학기당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수석입학장학금 : 수업료 전액 및 특별격려 장학금(입학 학기)
2. 성적우수장학금 : 특급, A급, B급, C급, D급, E급, F급으로 구분하되, 장학금의 지급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3. 재입학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개정 2012.8.21.)
4. 연계교육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개정 2009.3.20., 2012.2.13)
5. 경제사정곤란자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
6. 가족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개정 2016.2.15. 장학금 명칭 개정)
7. 유학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
8. 특기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
9. 공로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
10. 교직원 복지 장학금 :
 - 본인 및 배우자, 부모 : 수업료에 70%에 해당하는 금액(장학금 수혜시 졸업 후 재 입학 시 제외) (개정 2012.8.21.)
 - 자녀 : 수업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(개정 2012.8.21.)
 - 부설유치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: 등록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 (신설 2012.2.13.)
11. 국가근로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
12. 교수회장학금 : 전체교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
13. 교외장학금 : 각 장학재단에서 결정하는 금액 (개정 2012.8.21.)
14. 북한이탈주민 :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(2010.10.26 신설)
15. 다문화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2011.04.04. 신설)
16. 장애인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2011.04.04. 신설)
17. 동아리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2011.04.04. 신설)
18. 인증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2011.08.29. 신설)
19. 전공심화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신설 2012.2.13.)

- 20. 협약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신설 2012.2.13.)
- 21. 산업체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신설 2012.2.13.)
- 22. 사생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신설 2012.2.13.)
- 23. 한라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(신설 2012.9.20.)
- 24.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: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(신설 2014.4.17.)

제 10 조(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취소)

1. 재학생의 성적장학금은 고지서에 감면 지급하고 신입생 성적장학금은 성적 사정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, 학생이 신청하는 장학금은 접수 및 심의를 마친 후 지급한다.(2009.3.20 개정)
2.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취소한다.
 - 가.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
 - 나. 휴학한 때(다만 등록 후 휴학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)(2009.3.20 개정)
 - 다. 기타 장학금의 지급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때
 다만, 등록금 감면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학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. (개정 2013.2.8.)

제 11 조(이중지급 범위)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지급이 가능하다.

제 12 조(장학금의 회수) 착오로 인하여 장학금이 지급된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한다. 회수 시 대학명의 통장으로 회수한다. (개정 2013.2.8.)

제 13 조(장학금 대리수령) 제10조 1호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령을 위임 받을 때에는 학부모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등) 및 동의서 첨부하여 학부모가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다. (개정 2013.2.8.)(개정 2014.4.17.)

제 14 조(사무취급) 장학금에 관한 사무는 학생복지처에서 취급하고, 장학금 지급은 경리부에서 한다.

제 15 조(위임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(학장, 부학장 → 총장, 부총장으로 명칭 변경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 개정)